

제공일자	2015. 10. 12(월)	담당자	전용식 연구위원	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3775-9115)	연락처	3775-9035	총 4매

제목 : 보험연구원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세미나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: 강호)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「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」 세미나가 10월 13일(화)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됨.
-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「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」 주제발표를 통해 고가차량 증가로 발생하는 경제적·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함.
 - 김은경 교수(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는 「법적 측면에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」 주제발표에서 고가차량 증가가 다른 운전자에게 손해를 확대할 수 있는 위협요인이며,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률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.
 - 이후 소비자단체, 학계, 보험업계, 감독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진행됨.

고가차량 증가는 경제적·사회적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음

- 경제적 부작용은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증가 및 영업적자 누적임.
- 외산차 등 고가차량이 증가하면서 2012년 이후 자동차보험 물적손해가 수리비·추정 수리비 고액화, 과도한 렌트비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음.
 - 외산차는 2012년 75만대에서 2014년 111만 6천대로 증가하였고, 자

동차보험 물적손해 보험금은 2012년 5조 6,315억 원에서 2014년 6조 3,868억 원으로 증가함.

* 2010년에서 2014년간 대물손해 증가율은 9.6%를 기록한 반면 자차손해 증가율은 -1.4%를 기록함.

- 수리비와 추정 수리비 고액화의 원인은 고가차의 불투명한 수리 기준과 허위 견적서를 통한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임.

* 외산차의 수리비는 276만 원으로 국산차의 94만 원에 비해 2.9배, 렌트비와 추정 수리비는 각각 3.3배, 3.9배 높음.

* 외산차의 부품비는 국산차에 비해 4.6배, 정비요금은 2배 이상 비쌈.

- 과도한 렌트비의 원인은 표준약관에서 렌트 차량 기준을 동종의 차량으로 규정하기 때문임.

○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증가로 자동차보험회사의 영업적자는 2012년 5,751억 원에서 2014년 1조 1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함.

□ 사회적 부작용은 렌트비와 수리비에서 초과이익을 모색하는 도덕적 해이 심화, 저가차 운전자의 경제적 파산 위험 확대와 보험료 부담 가중 등 형평성 왜곡 심화 등임.

- 고가차의 렌트비가 차량 수리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경미한 사고는 추정 수리비를 통한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화됨.

- 고가차와의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2억 원 이상 고액 대물배상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비중은 2012년 36%에서 2014년 56%로 증가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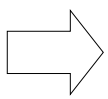
- 저가차 운전자의 물적손해 1원당 보험료는 1.63원이나 고가차 운전자의 물적손해 1원당 보험료는 0.75원으로 저가차의 보험료 부담이 고가차에 비해 2.2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저가차 운전자들의 고가차 운전자 물적손해 부담을 의미함.

* 대물담보 한도확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고려할 경우 저가차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클 것임.

고가차량이 초래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

- 수리비 고액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.
 - 첫째,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와 대체부품 활성화임.
 - 경미사고 수리기준 규범화는 부품교체를 억제하여 수리비 고액화와 보험사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,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고시(혹은 행정지도) 등으로 구속력을 확보한 후 표준약관에 반영되어야 함.
 - 고가차 수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함.
 - 둘째, 자차 손해담보 추정 수리비 제도 폐지와 추정 수리비 이중 청구 방지 시스템 구축
 - 단독·일방과실로 인한 자차사고는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됨.
 - 추정 수리비 지급내역 DB구축 및 운용으로 이중 청구를 방지할 수 있음.
- 대차 차량 기준과 대차 적용 수리 기간 합리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임.
 - 표준약관 지급기준을 ‘동종의 차량’에서 ‘동급의 차량’으로, ‘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’을 ‘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완료 시점까지의 통상의 수리기간’으로 변경해야 함.
 - 렌트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과이익을 제거하여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과 실손보상 원칙을 유지해야 함.
- 자차담보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신설로 보험료 측면에서 형평성 제고
 - 고가차량의 고가 수리비가 저가차량에게 전가되어 보험의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사례가 빈발함.

- 자차담보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은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**120%를 초과할 경우**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자차담보 보험료를 더 부과함.
- 최고 **150% 이상인 국산차 8개, 외산차 38개 차종에 대해서는 15%의 할증요율을 부과함.**
 - 국산차 322개 차종, 외산차 40개 차종을 대상으로 하며 차종별 수리비가 150%를 초과하는 구간에는 국산차 8개, 외산차 38개가 있음.



동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될 경우 대다수 저가차량 보유자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

장기적으로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가격기능 제고가 필요

- 제도개선 효과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장변화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신속적이어야 함.
- 과거 제도개선 효과가 소멸된 이유는 제도개선으로 인한 단기적 손해액 감소에 대해 보험료 인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임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kiri.or.kr>